

2026년 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[공동사업 분야]

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4. 20

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지역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
- 지원대상 : 주무관청이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
- 사업기간 : 2026년 4월 ~ 12월
- 지원분야 및 예산

	사업명	사업내용
1	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	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 (R&D, 마케팅, 브랜드, 교육 등) → 조합당 최대 2백만원 × 2개 조합

□ 사업내용 (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)

- 목적 :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마련 및 공동사업 역량 강화
- 사업내용 :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

<예시>

- ① 공동 R&D : 업종 공통 기술개발 수행, R&D 컨설팅, 시제품 개발, R&D성과물 검증을 위한 시험/분석 등
- ② 공동 브랜드·상표 : 브랜드 컨설팅, 개발 및 등록, 사후관리 등
- ③ 공동 마케팅 : 홍보 카탈로그·영상 제작, 판로개척 박람회·전시회 참가, 팝업/SNS/유튜브/메신저 등 온·오프라인 홍보 등

- ④ 수출 컨소시엄 : 업종·사업별 컨소시엄 구성 및 해외 전시회 등 파견
- ⑤ 교육 및 워크숍 : 조합원사 경영/경제/AI역량 강화 위한 교육, 업계 선진 사례 탐방 등 워크숍·세미나
- ⑥ 기타 조합·업계 공통현안 발굴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·정책조사 등

○ 총 지원예산 : 4,000천원 (조합당 최대 2,000천원)

- 협동조합은 신청사업 전체예산의 최소 10% 이상 자부담* 필수

* 총 사업금액 (지원금 + 조합부담금) 기준 10% 이상을 의미

- 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예산 변동될 수 있음

○ 추진절차



○ 선정위원회 평가 사항

- 평가지표 : 정량평가 20점 + 정성평가 80점 = 총 100점

- 점수비중

▶ (정량평가 20점) 협동조합 관리 및 법정 의무사항 준수 항목

* 중앙회 지역본부에서 조합포털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

- 1) 기본 정보등록 (5점)
- 2) 임원[이사장] 선임 보고 (5점)
- 3) 금년도 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(5점)
- 4) 조합원 변동보고 (5점)

▶ (정성평가 80점)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

- 1) 사업 필요성 및 창의성 / 내용 구체성, 사업비 산출 적정성 (50점)
- 2)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기대효과 (30점)

○ 필요서류

사업신청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 공문 · 정보활용동의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신청서 · 사업자등록증
결과보고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결과보고 공문 · 지출 증빙(계약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이체영수증 등) 	

○ 유의사항

- [신청불가] 이사장·상근이사 전체 공석, 휴면, 총회 미개최 및 결과 미보고 등 법정보고 의무 미준수 조합
- [신청불가] 2026년 1차 공고(공동사업 분야)에서 선정된 조합
- [사용불가] 원자재·장비·시설·건물 구매 및 임대, 차량 구입, 조합 운영비(인건비, 복지비 등), 답례품 등 사업 무관 비용
- 선정 이후 조합 부실운영 발생, 법정 의무사항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중도 지원취소 조치하며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할 경우 차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적용
 - * 강사 이력서, 강의확인서, 강사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
- 회의비(식비)는 대구시 예산편성지침 단가 적용
- 통역·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적용
- 선정조합 대상 중간점검은 유선·이메일·조합방문 등을 수시 실시
- 사업내용 변경은 반드시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승인 후 추진할 것
 - * 사업 일자, 장소 등 단순변경은 승인 불필요, 사업명이나 구체적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승인절차 필요하며 내부검토에 따라 불승인될 수 있음
 - ➔ 불승인 시 조합은 기존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중도포기 결정 필요
-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(사업일정 미준수 등) 최대 2회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취소 조치

- ▶ 1차 현장점검 시 사업추진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취소
 예) 사업계획 상 6월초 판매전 개최임에도 7월말까지 미개최
 → 현장점검 실시 → 추진의사가 없을 경우 즉시 취소
- ▶ 1차 현장점검 시 사업추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후 1개월 간 미추진 시 2차 현장점검 후 선정취소 검토

-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 지출증빙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지원취소
- 12월 둘째 주까지 결과보고 미이행 시 중도포기 간주(취소 조치)

□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	사업명	신청 기간	제출서류
1	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	4. 20(월) ~ 5. 6(수) 18:00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붙임1) 신청공문 ▶ (붙임2) 신청서 ▶ (붙임5) 정보활용동의서 ▶ 사업자등록증

※ “1. 공동사업” 양식은 별첨 참고

공고는 지역본부 홈페이지 dg.kbiz.or.kr → [공지사항] 게시

□ 제출방법 및 문의

- 이메일 접수 ✉ ch5608@kbiz.or.kr
 -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해 접수 여부 확인 必
 - * 미제출 및 확인 누락의 경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제출 불가
- 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
 ☎ 053-524-2501 (내선 2063#)